

## 2025년 디자인보호법 2차 [문제-2]에 대하여

일비스 변리사학원 디자인보호법 전임 변리사 김웅

甲의 등록디자인 A의 물품과 乙의 확인대상디자인 B의 물품은 '식품보관용용기'이다.  
 甲의 등록디자인 A와 乙의 확인대상디자인 B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① 전체적으로 입구부와 몸체부로 구성된 원통형 형상이고, ② 용기 입구에는 톱니형 돌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③ 용기 몸체부는 상·중·하로 구분되고, 상부와 하부는 돌출되어 있는 반면, 그 중간에는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수직벽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통점은 이미 공지된 선행디자인 W와 X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반면, 甲의 등록디자인 A와 乙의 확인대상디자인 B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④ 등록디자인 A는 용기 입구부에 형성된 톱니형 돌기가 5개로 삼각형을 이루고 있지만, 확인대상디자인 B는 사다리꼴 형상의 돌기 4개가 연속 배열되어 있고, ⑤ 몸체부의 돌출된 상·하부를 비교하면, 등록디자인 A의 상부는 둥글게 돌출되어 있고, 하부는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상으로 돌출되어 있지만, 확인대상디자인 B는 돌출된 상·하부 모두 수직 형상이며, ⑥ 바닥면을 비교해보면, 등록디자인 A는 평평한 형상이지만, 乙의 확인대상디자인 B는 바닥면 중앙부분이 둥글게 솟아있는 형상이다. [참조: 아래 도면 (가), (나), (다)]

(가) 정면도

(나) 사시도

(다) 톱니형 돌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디자인 등록요건으로서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및 등록디자인 A의 대상물품인 '식품보관용용기'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14점)

(2) 乙은 甲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乙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기각되었고, 乙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에서 乙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6점)

본 문제는 2025.1.23. 선고된 2024후11026 권리범위확인(디)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출제된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276&gubun=4&type=5>

1. 출제 가능한 판례인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나. 제2차 시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기준일

- 법령(조약 포함) : 제2차 시험일(2025. 7. 18. ~ 7. 19.)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판례 : 2025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를 출제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판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를 출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대법원 판결(2024후11026)은 특허심판원 2023당2200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2024허12128)에 이은 파기환송 판결인데, 현재 그 환송심인 특허법원 2025허환송10272에서는 심결이 취소되었지만, 최종 단계인 특허심판원 2025당(취소판결)75 사건은 2025년 7월 25일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이다. 즉, 상기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2차 시험일 기준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사건번호	2024후11026	사건명	[전자]권리범위확인(디)
원고	주000000	피고	양00
재판부	특별3부(가) (전화:3480-1366)		
접수일	2024.09.26	종국결과	2025.01.23 파기환송
원고소가	100,000,000원	피고소가	0원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상소인		상소일	
상소각하일			
송달료,보관금,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사건이 종결되고 송달료 종결 혹은 보관금계좌가 종결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판결도달일	2025.01.24	확정일	

상기 대법원 판례의 선고일 2025.1.23.만 기준으로 본다면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부합하지만, 이번 2차 시험일 기준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도 공개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출제하는 것은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너무 가혹하며, 바람직하지 않다.

2. 출제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문제-2]는 상기 대법원 판례의 사실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인 ‘식품보관용기’, 甲의 등록디자인과 乙의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열거하고, 상기 공통점이 선행디자인 W와 X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기 설문 내용을 통해 양 디자인의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요부에 해당하여 지배적인 특징을 발휘하므로, 양 디자인이 비유사하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하는 출제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설문 (1)과 설문 (2)의 출제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

설문 (1)

디자인의 등록요건으로서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및 등록디자인A의 대상물품인 ‘식품 보관용 용기’에서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14점)

설문 (1)에서 언급된 “대법원 판례”가 상기 대법원 판례(2024후11026)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대법원 판례의 주류적 입장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상기 대법원 판례(2024후11026)를 기준으로 보면, 디자인의 등록요건(신규성 등)으로서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일반적인 대법원 판례의 주류적 입장을 기준으로 보면, 등록디자인A의 대상물품인 ‘식품 보관용 용기’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아무런 비교대상디자인도 없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상기 대법원 판례(2024후11026)는 ‘식품 보관용 용기’가 옛날부터 흔히 사용된 것으로서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고 구조적으로도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물품이므로, 식품 보관용 용기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그렇다면 상기 대법원 판례(2024후11026)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어서, 설문 (1)의 “대법원 판례”가 무엇인지 너무 애매하고, 불명확하다.

설문 (2)

乙은 甲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乙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기각되었고, 乙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에서 乙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설문 (2)에서 언급된 “乙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 즉, 설문에서 乙은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최대한 융통성 있게 해석하여 “乙의 주장”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취지(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로 보더라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대법원 판례(2024후11026)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므로, 수험생들에게 파기환송 또는 인용심결 확정 등을 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건번호	2024허15356	사건명	[전자]등록무효(디)
원고	양OO	피고	주OOOOOO
재판부	제5부(다) (전화:042-480-1457,8)		
접수일	2024.11.12	종국결과	2025.07.17 원고패
원고소가	100,000,000원	피고소가	0원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상소인		상소일	
상소각하일			
송달료,보관금,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사건이 종결되고 송달료 종결 혹은 보관금계좌가 종결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판결도달일	확정일		

더 나아가, 상기 대법원 판례의 대상인 등록디자인(제30-1145243호)에 대해서는 무효심판(2024당1349)이 청구되어 인용되었고(청구성립), 디자인권자가 심결취소소송(2024허15356)을 제기하였으나 2025년 7월 17일에 무효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원고 패), 현재 상고 여부는 불명확하다. 이대로 확정되면, 상기 대법원 판례의 대상인 등록디자인은 무효될 수 있다.

### 3. 결론

상기와 같은 문제가 없었다면, [문제-2]는 디자인의 동일·유사에 관한 일반 법리와 대법원 판례의 주류적 입장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설문 (1)은 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에 관한 일반 법리(공지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 등)를 설명하고, 설문 (2)는 설문 내용으로 파악되는 바와 같이 양 디자인의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요부에 해당하고 지배적인 특징을 발휘하므로 양 디자인이 비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乙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결론 내면 된다.

올해 디자인보호법 2차 [문제-2]는 여러 면에서 매우 아쉽다. 문제를 접한 수험생들이 본인의 실력과 무관하게 매우 당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되어 적절한 채점이 이루어지길 소망해 본다.

끝.